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11호 2025. 5. 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53호)

공 고

-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예천군 공고 제2025-731호)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73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예 천 군 수



- ①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②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승 인 조 서

사업명	위 치				승인 면적 (㎡)	사업기간	총소요 사업비 (천원)	사업시행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개간)	예천	호명	산합	산8	4,670	(당초) 2021.07.13.~2024.12.31. (변경) 2021.07.13.~2025.06.30.	340,000	김 수 *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육아 등을 위한 전출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육아 등을 위한 전출 제한 기간의 적용 예외 규정 신설(안 제33조)

-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타 지자체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내 전출 허용

나. 기술직렬 직군 명칭 변경(안 제19조, 별표 12, 별표 15, 별표 17)

- 기술직공무원 → 과학기술직공무원

다. 용어 정비(안 별표 1)

- 취업보호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안 별표 1)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urs29@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3조를 제34조로 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 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

별표 1, 별표 12, 별표 15, 별표 1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생략)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u>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u>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생략) ④ ----- ----- <u>과학기술직공무원</u> ----- ----- ----- -----.
<신 설>	<u>제33조(자녀 양육 공무원 등의 인사관리 우대)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다.</u>
<u>제33조</u> (생략)	<u>제34조</u> (현행 제33조와 같음)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 (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지원 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12]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제2항 관련)

1. 행정직군 및 과학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 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 회계사, 변리사, 감정 평가사, 세무사, 관세 사,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1급, 사회조사 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 조사분석사2급, 임상 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과학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15]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4항 관련)

1. 과학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목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녹 지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농 업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수 의	수 의	수의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해양수산	일반해양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수산	
	일반선박	
	선박항해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기관	항해(학)
	어 로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해양교통시설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일반토목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건 축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지 적	건축(건축설비)
	측 지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	통신사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일반항공	
항 공	조 종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정 비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제약학, 약학, 위생제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7]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과학기술직렬 전직 시 전직시험 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과학기술직렬 기준표(제19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농 업
		농 촌 지 도	일 반 농 업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촌지도	축산
	농공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토목
녹지연구	임업경영	임업	전직류
		농촌지도	임업
수의연구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약무	약무
	공중보건	보건	보건
		식품위생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건축		농업토목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
	재난관리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조 경
	잠 업	농 업 연 구	산 업 근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농 업 연 구	축 산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수 의	수 의
	가 축 위 생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기 계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 1. 17.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교통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및 경비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1조)
 - 교육 대상 :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 교육 내용
 - ①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②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 성폭력 예방 교육
 - ③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방법 등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건설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lsm930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3) 팩스 : 054-650-63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전화 : 054-650-625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
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
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1조(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u> <u>1. 교통사업자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u> <u>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u> <u>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u> <u>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시간, 내용 및 방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u> <u>③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제11조 · 제12조 (생략)</u>	<u>제12조 · 제13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u>

